

北韓, 發明特許權도 공동財産 發明人에게 배지수여 및 補償金 지급

공산권내에서 특허권은 私的 권리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보호되는 개념으로 간주하고있다.

최근 특허청이 내놓은 「北韓의 특허자료」에 따르면 北韓도 예외일 수 없어 발명의 권리는 국가에 귀속되고 발명가는 다만 관련법에 따라 대우를 받게 돼있다.

北韓의 「특허 및 기술혁신에 관한 법률」序文에는 『관리자 기술자 노동자들은 서로 뭉쳐 재치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술혁신의 속도를 높여나가자 않으면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서로뭉쳐」란 뜻은 결국 北韓의 발명이란 권리는 공동소유재산이란것을 명확히 해준다.

北韓의 工業所有權에 관한 법률은 「특허및 기술혁신에 관한 법률」 이외에 「상표와 의장에 관한 법률」이 있다.

「특허및 기술혁신에 관한 법률」은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 40개조문으로, 「상표와 의장에 관한 법률」은 상표와 의장에 대해 55개 조문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이 법률과 우리나라 관련법률을 비교해보면 特許인 정방법상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자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는 특허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반해 北韓의 발명권리는 국가에 귀속되고 발명자는 발명자증이라는 증명서만 받게 된다.

그러나 발명자에 대한 대우를 결코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特許관리기관인 「과학기술국가위원회」 산하 「발명위원회」에서 발명자증소유자에 대해 배지를 수여하며 각종 賞의 추천대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또한 발명

의 경우 그 발명을 활용, 얻어지는 6개월분 효과의 5~20%에 달하는 금전적보상을 받으며, 실용신안의 경우는 5~10%를 지급받는다. 외국인의 특허출원은 특허국제조약인 파리조약에 따라 인정되는데 특허기간은 15년으로 돼있다.

한편 공소권출원전수를 WIP O(세계지적소유권기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비교해볼때 87년기준 北韓 1만6천95건, 韓國 9만4천6백2건으로 우리나라의 2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外誌에서>

金星社 中國에 特許出願 TV타이머 부가회로등 5件

金星社(대표 具滋學)가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지난 1월28일 홍콩의 中國專利代理有限公司를 경유, 中國 특허국에 5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金星社가 특허출원중인 품목은 TV타이머 기능부가회로, 압호를 이용한 TV수상기의 영상 및 음성제어회로, 다방식 수신기의 중간주파수 변환회로와 음성트랩회로, TV 및 VT

R의 영상신호보상회로 등인데 中國정부가 한국기업의 직접특허출원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中國은 현재 한국기업의 직접 특허출원 창구로서 홍콩의 中國專利有限公司,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전리대리부, 홍콩의 永新전리유한공사, 上海전리대리사무소 등 4개 기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